

심 의 결 과 원안대표가결

의안번호	회의차수	회의일자	제 의 자
20	9	1995 4 6	송재 김명호

의 안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 개정

의결사항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을 불임과 같이 개정한다

제외관계 법규조항 한국은행법 제7조 및 은행법 제30조의 2

제외취지 금융자유화 및 개방화에 따른 금융기관의 경쟁심화 및 위험증대에 대비하여 금융기관의 거액어신 취급에 따른 신용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은행법 제30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은행법 거액어신 총액한도제를 시행하고자 부건 전기와 같이 의결할 것을 제외함

30

35

< 참고사항 >

제의관계 법규조항

한국은행법 제7조

(생 략)

- ①
- ②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이 법에 규정된 범위내에서 통화신용의 운영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 명백히 부여된 기타 기능과 권한을 행사하며 한국은행의 업무, 운영, 관리에 관한 지시감독을 한다
- ③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제2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규정, 지시를 발할 수 있다

④ - ⑥

(생 략)

은행법 제30조의 2

- ①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동일계열기업군 단위로 금융기관의 대출이나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의 합계액의 한도를 정하여 제한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동일계열기업군 소속 기업체의 범위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정한다
- ③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금융기관의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동일계열기업군 각각에 대출이나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의 합계액이 당해 금융기관 자기자본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경우(이하 "거액여신"이라 한다)에 있어서는 그 거액여신의 총합계액의 한도를 정하여 제한할 수 있다 (신설)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 주요 개정내용

1 은행별 거액여신 총액한도 설정

거액여신 총액한도 당해은행 자기자본의 5배 이내로 설정

거액여신

- 동일인 또는 동일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대출 및 지급보증)이 은행 자기자본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당해동일인 또는 동일 계열기업군에 대한 모든 여신

- 대상 동일인 및 동일계열기업군

- 은행 자기자본대비 15%를 초과하는 여신을 수혜하는 모든 동일인 및 동일 계열기업군
- 동일계열기업군 결정기준은 현행 여신관리대상 계열기업군 선정시 적용하고 있는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의 선정기준을 준용

2 거액여신 총액한도초과여신 처리기준

- 경과기간 설정

- 제도시행일 현재 거액여신 총액한도를 초과하고 있는 은행에 대하여는 5년 이내에 동 한도내로 감축하도록 함 다만,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인정

한도초과 예외승인

- 정부의 주요 산업정책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거나 기업인수 합병 등으로 부득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은행감독원장이 예외승인

3 거액여신 총액 관리 및 보고

- 거액여신 총액 관리에 관한 금융기관 내부지침 설정내용 및 거액여신 취급현황의 은행 감독원장일 보고 의무화

4 거액여신 총액한도제 시행시기 1995. 6. 1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제 1조 ~ 제 4조 (생 략)</p>	<p>제 1조 ~ 제 4조 (현행과 같음)</p>	
<p>제 3 장 <u>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관리</u></p>	<p>제 3 장 <u>금융기관의 편중여신 관리</u></p>	<p>○ 거액여신 총액한도제 도입등으로 여신관리제도의 중심이 편중여신관리 기능으로 전환됨을 반영</p>
<p>제 5조 (대상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제한)</p>	<p>제 5조 (편중여신 억제)</p>	
<p>① 금융기관은 금융기관 대출기준 상위 30대 계열기업군(이하 "대상기업군"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업체(이하 "대상기업체"라 한다)에 대하여는 여신취급을 가급적 억제하고 이의 재무구조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p>	<p>① 금융기관은 금융기관 대출기준 상위 30대 계열기업군(이하 "30대 계열기업군"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업체와 은행법 제30조의2 제3항에서 정한 "거액여신"을 수혜받은 자에 대하여는 여신취급을 가급적 억제하고 이의 재무구조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p>	<p>○ 거액여신 총액한도제 도입으로 편중여신 관리대상 확대</p>
<p>②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이하 "은행감독원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대상기업군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선정하고 각 금융기관에 통보한다 다만, 주기업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계열기업군은 대상기업군으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②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이하 "은행감독원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30대 계열기업군을 선정하고 각 금융기관에 통보한다 다만, 주기업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계열기업군은 30대 계열기업군으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 항 분리</p>
<p>1 ~ 3 (생 략)</p>	<p>1 ~ 3 (현행과 같음)</p>	
<p>(신 설)</p>		
<p>③ (생 략)</p>	<p>③ 제1항 및 제2항의 계열기업군의 결정기준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를 준용한다</p>	<p>○ 30대 이하의 동일계열기업군 선정기준 명시</p>
<p>제 6조 (대상기업군에 대한 여신한도)</p>	<p>④ (현행과 같음)</p>	<p>○ 항 철폐</p>
<p>① 은행감독원장은 대상기업군에 대한 여신편중을 시정하기 위하여 금융기관별로 대상기업군에 대한 대출금 점유율의 한도를 정하여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주력업체로 선정된 기업체에 대한 대출금은 점유율 산정에서 제외한다</p>	<p>제 6조 (30대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한도)</p> <p>① . . . 30대 계열기업군 . . . 30대 계열기업군</p>	<p>○ 자구수정</p>

현행	개정 (안)	비고
<p>(신설)</p> <p>㉔ 제1항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 및 대상기업군의 범위와 주력업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은 은행감독원이 정한다</p> <p>(신설)</p>	<p>㉔ 금융기관은 제1항의 대출금이 동일 계열기업군에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㉕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 및 계열기업군의 범위와 주력업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은 은행감독원이 정한다</p> <p>제 6조의2 (거액어신 총액한도)</p> <p>㉑ 금융기관은 은행법 제30조의 2 제3항에서 정한 "거액어신"의 총합계액(이하 "거액어신 총액"이라 한다)이 당해 금융기관 자기 자본의 5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p> <p>㉒ 금융기관은 정부의 주요 산업정책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거나 기업인수 합병 등으로 제1항에서 정한 한도를 부득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은행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㉓ 제1항의 적용을 받는 어신은 금융기관 대차대표(은행계정 및 신탁계정)상의 다음 각호의 과목을 말한다. 다만, 입찰보증 및 은행법 제15조 제2항 각호에 규정한 지급보증을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출금 2. 외화대출금 3. 내국수입유신스 4. 지급보증대지급금 5. 지급보증 <p>㉔ 금융기관은 거액어신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내부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p>	<p>○ 동일계열기업군별 어신한도제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 마련</p> <p>○ 항 채하, 자구수정</p> <p>○ 금융기관별 거액어신 총액 한도 설정</p> <p>○ 한도초과가 불가피한 경우 예외인정 근거 마련</p> <p>○ 대상어신의 범위설정</p> <p>• 은행법 제15조 제2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른 금융기관, 신용보증 기금, 보험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으로부터 채무의 보증이나 보험에 의한 보증을 받아 보증 또는 인수한 채무 2.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무를 보증 또는 인수한 채무 3. 국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보증 또는 인수한 채무 <p>○ 금융기관의 거액어신 관리에 관한 내부지침 설정운용 의무화</p>

현행	개정 (안)	비고
<p>제 7조 (여신거래은행)</p> <p>① 여신거래은행은 은행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u>대상기업체의 주된 거래은행(이하 "주거래은행"이라 한다)</u>을 정한다</p> <p>② 주거래은행은 대상기업체에 대한 현지금융을 포함한 전체 여신상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금융기관은 대상기업체에 대한 기업정보를 입수한 때에는 이를 해당 주거래은행에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여신거래은행은 대상기업체에 대하여 거래의 여신을 취급할 경우에는 가급적 다른 금융기관과 협조하여 용자를 함으로써 여신이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④ 대상기업군의 주거래은행은 <u>대상기업군</u> 주기업체의 주거래은행으로 한다</p> <p>⑤ (생략)</p>	<p>⑤ 금융기관은 은행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u>거래여신 취급현황을 은행감독원장앞 보고하여야 한다</u></p> <p>⑥ 은행감독원장은 <u>거래여신총액이 급격히 증가하거나 제1항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u></p> <p>제 7조 (여신거래은행)</p> <p>① <u>30대 계열기업군 소속기업체의</u></p> <p>② <u>30대 계열기업군 소속기업체에</u> <u>30대 계열기업군 소속기업체에</u></p> <p>③ <u>30대 계열기업군 소속기업체에</u></p> <p>④ <u>30대 계열기업군의</u> <u>30대 계열기업군</u></p> <p>⑤ (현행과 같음)</p>	<p>○ 거래여신 취급현황 보고의무 명시</p> <p>○ 은행감독원장의 거래여신 관리권거 마련</p> <p>○ 자구수정</p>
<p>제 8조 (기업재무구조 개선)</p> <p>① 은행감독원장은 <u>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중분류를 기준으로 업종을 분류하고, 대상기업체를 표본업체로 하여 매년 "업종별 자기자본 지도비율"을 설정한다</u> 다만, 은행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업종분류 및 표본업체의 범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p>	<p>제 8조 (기업재무구조 개선)</p> <p>① 은행감독원장은 <u>30대 계열기업군 및 그 소속기업체에 대하여 업종별 자기자본지도비율을 설정하여 여신거래은행의 기업재무구조 개선 지도에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u></p>	<p>○ 자구수정</p>

현행	개정(안)	비고
<p>② 주거래은행은 대상기업군 및 대상기업체의 전반적인 차입금상향 등을 감안하여 은행감독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상기업군 및 대상기업체의 경영을 지도함으로써 이의 재무구조개선을 유도하여야 한다</p> <p>1 *업종별 자기자본도비율*을 지표로 하는 자기자본의 충실화 유도</p> <p>2 기업신설, 매입, 출자 등 기업투자의 제한 및 주력업종이 아닌 기업의 정리유도</p> <p>3 ~ 7 (생략)</p> <p>③ 금융기관은 자기자본비율이 악화되거나 차입금이 현저히 증가한 대상기업군에 대하여는 여신을 억제하는 등 재무구조가 개선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은행감독원은 이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p> <p>④ 주거래은행은 제2항의 시행에 따른 제반조치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기업체에 대하여 일정기간 여신의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동항 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금액에 상당하는 대출금과 원화지급보증에 대하여 일정기간 연체대출 최고 비율과 지급보증료 최고율의 1.5배의 요율을 각각 적용하여야 한다</p> <p>⑤ (생략)</p> <p>제 9조 (규정적용 일부배제) 은행감독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상기업체에 대하여는 제6조 및 제8조의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1 ~ 3 (생략)</p> <p>제 9조의 2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 대한 보고) 은행감독원은 제3장의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관리와 관련한 주요사항을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② 30대 계열기업군 및 그 소속기업체의 30대 계열기업군 및 그 소속기업체의</p> <p>1 (좌 등)</p> <p>2 무분별한 기업신설, 매입, 출자 등 기업투자의 억제 및 주력업종이 아닌 기업의 정리유도</p> <p>3 ~ 7 (현행과 같음)</p> <p>③ 30대 계열기업군에</p> <p>④ 동항 제3호를 위반하는</p> <p>⑤ (현행과 같음)</p> <p>제 9조 (규정적용 일부배제) 30대 계열기업군 소속기업체</p> <p>1 ~ 3 (현행과 같음)</p> <p>제 9조의 2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 대한 보고) 은행감독원은 제3장의 금융기관의 편중여신 관리와 관련한</p>	<p>○ 지구수정</p> <p>○ 기업투자승인 관련제도 폐지에 따른 조문정비</p> <p>○ 지구수정</p> <p>○ 기업투자승인 관련제도 폐지에 따른 조문정비</p> <p>○ 지구수정</p> <p>○ 지구수정</p>

현행	개정 (안)	비고
<p style="text-align: center;">제 4 장 보칙</p> <p>제10조 (제재) ~ 제12조 (위임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생 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 style="text-align: center;">(생 략)</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 style="text-align: center;">제 4 장 보칙</p> <p>제10조 (제재) ~ 제12조 (위임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 style="text-align: center;">(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5 6 1 부터 시행한다</p> <p>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제6조의2 제1항에 정한 거액어신 총액 한도를 초과하는 금융기관은 이 규정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제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경과기간 설정 및 은행감독원장의 예외인정 권한 부여</p>